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4. 9. 26.>

[시행일: 2025. 1. 1.]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납부하는 응시 수수료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수수료의 감면·반환에 관련된 부분

제 회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응시원서(원본)

※란은 수험자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앞쪽)

①응시번호	※			사 진 (3.5cm×4.5cm)		
②검정분야		응시시험	☐ 제1차 필기 ☐ 제2차 실기			
③성명	(한글)		(한자)			
⑥전화번호	일반전화	④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⑤주소 (주민등록지)				
⑦면제신청(해당자만 기입)	☐ 필기시험 합격		제 회	접수담당 확인 (인)		
⑧응시 수수료 감면신청(해당자만 기입)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3.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제 회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에 응시하고자 다음 사항을 서약하고 이 원서를 제출합니다.
이 원서에 적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응시자격에 해당하지 않으면 합격 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검정기관의 장 귀하

제 회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응시표				사 진 (3.5cm×4.5cm)	
⑨수험번호	※				
⑩검정분야					
⑪성명		⑫주민등록번호			
⑬시험일시 및 장소				년 월 일	
검정기관의 장 (인)					
※ 주의사항					
1. 실기시험은 시험장의 시설, 장비 및 일정 등을 고려하여 시행되므로, 평일에 시행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 시행될 수 있습니다.					
2. 자격증 발급 안내: 준비물(신분증, 증명사진 1장, 발급수수료), 발급장소(검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지정합니다)					

검정기관 확인사항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만 확인합니다) 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만 확인합니다)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만 확인합니다)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⑧응시 수수료 감면신청란 중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기입한 경우에만 작성 대상에 해당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검정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검정기관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응시원서 기재요령

- 이 원서는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응시원서로, 필기, 실기를 구분하여 ☐표로 적어야 합니다.
 1. 모든 내용은 정자로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숫자는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2. 제출일자: 응시원서 원본과 응시표에 제출일자를 적어야 합니다.
 3. 검정분야②⑩: 응시하려는 분야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4. 성명③⑪: 한글로 적되 원본의 한자란에는 한자를 적어야 합니다.
 5. 주민등록번호④⑫: 주민등록번호는 칸에 맞추어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6. 주소⑤: 주민등록지 주소를 적되, 통·반(아파트인 경우 동·호수)까지 적어야 합니다.
 7. 면제신청⑦: 환경측정분석사 필기시험을 2년 이내에 합격한 경우에만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8.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⑧응시 수수료 감면신청란 중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기입한 경우에만 작성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9. 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 규격의 동일 원판으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붙여야 합니다.

응시자 주의사항

1. 응시원서에 잘못 적어 착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검정기관이 책임지지 아니하니, 이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2. 접수된 응시원서와 그 밖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다만, 수수료는 검정시행형태, 기간, 사유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환불하여 드립니다).
3. 응시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부터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 발급 시까지 이 수험표를 깨끗이 보관하여야 하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그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2년 동안(2년 이내에 검정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다음에 이어지는 1회로 한정합니다) 필기시험을 면제받게 됩니다.
4.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는 수험표에 적혀 있는 것과 공고된 것을 반드시 대조 확인하고, 실기시험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착오가 없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5. 응시자는 필기시험 시 (1)수험표 (2)신분증 (3)검은색 사인펜 (4)검은색 볼펜 (5)계산기 등을 가지고 지정된 입실시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그 후에는 입실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 필기도구 및 계산기를 남에게 빌리거나 빌려주지 못하며,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PDA, 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카메라, 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를 가지고 있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응시자가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할 수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그 자격이 취소됩니다.
8. 응시원서 접수처 및 검정장에는 주차시설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될 수 있는 대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